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43
----------	-----

2017. 7. 1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3일

-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연철흙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2003년 국민에게 개방되어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음.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설치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(안 제12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

-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는 지난 2003년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 이후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음. 이에 반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실이 없어 응급 환자는 물론이고 부상이 경미한 관람객들조차 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임.
- 충북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게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의무실 설치의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 또한, 청남대 출입도로는 관람객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43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6월 26일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
발 의 자 : 연철흙, 김학철, 박한범,
박봉순, 이연구, 최병윤,
이숙애

1. 개정이유

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2003년 국민에게 개방되어 누적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음.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설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(안 제12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- 자(者) → 사람, 익일 → 다음 날,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한 → 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, 인정되는 → 인정하는, 판단되는 → 판단하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수행자**”를 “**수행을 하는 사람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**자로서**”를 “**사람으로서**”로, 같은 호 및 제11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자**”를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“**익일**”을 각각 “**다음 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**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**”을 “**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**자**”를 각각 “**사람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인정되는**”을 “**인정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**도지 사**”를 “**도지사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**판단되는**”을 “**판단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**자가**”를 각각 “**사람이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**인정될**”을 “**인정할**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반환할 수 있다**”를 “**반환한다**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**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소장은 관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.

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**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자**가”를 “**사람**이”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5조)제1항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사람**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입장료) ① (생략)	제4조(입장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	②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.
1.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<u>수행자</u>	1. ----- <u>수행</u> <u>을 하는 사람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<u>자</u>	3. ----- <u>사람</u>
4.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<u>자</u>	4. ----- ----- <u>사람</u>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9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<u>자</u> 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<u>자</u>	9. ----- <u>사</u> <u>람으로서</u> ----- <u>사람</u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11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<u>자</u>	11. ----- ----- <u>사람</u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	③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.
1.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<u>자</u> : 단체입장료에 준함	1.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

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
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단
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
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
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익일
까지 입장할 때 : 별표1의 입
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
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
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
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
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:
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
을 할인. 단, 단체입장 어린이
및 노인은 1천원 할인

④ (생략)

⑤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
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귀책사유
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 경
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 한다.

1.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
물품을 휴대한 자
2.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
우려가 있는 자

② (생략)

2. -----

----- 다음
날-----

3. -----

----- 다음 날-----

----- .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. ----- 관람객에
게 귀책사유가 없는 -----
----- .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

-- 사람은 -----.

1. -----
----- 사람
2. -----
----- 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 (생략)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4. (생략)

5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

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-----

----- 인정하는 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 도지사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판단하

는 ---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

① -----

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
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자
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
3.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
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
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
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
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
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
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
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
경우

3. (생략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설
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
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
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
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
상) ①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사
람이 -----

3. -----
----- 사람
의 -----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인정할
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-----

----- 반환
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
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
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
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12조(관람료 징수) ① 소장 및
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
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및
전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
수 있다.

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
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
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
되 관람료는 소장과 사전에 협
의한 후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생 략)

제15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청남
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
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
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

② ----- 사람은 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소장은
관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
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
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
다.

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
인력을 배치한다.

제13조(관람료 징수) ① -----

사람은 -----

-----.

② ----- 사람이

-----.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3조 및
제14조와 같음)

제16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-----

----- 사람은 ----

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<u>제16조</u> (생략)	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7조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
--	--

관 계 법 령

☐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의무실 설치를 위한 집기, 의약품 구매, 의료인력 인건비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12조 의무실 설치와 의료인력 배치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 요인: 의무실 설치 및 의약품 구매 , 인력배치 등

나. 추계의 전제: 수시

다. 추계결과 : ‘17년도부터 향후 5년간 138,000천원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 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년도)	2차년도 (2018년도)	3차년도 (2019년도)	4차년도 (2020년도)	5차년도 (2021년도)
세 출	138,000	30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

6. 작성자 : 연철흠 의원